

特許制度와 節次물01(3)

⑨ 審查節次

特許廳에 提出된 出願書는 方式審查, 分類審查 그리고 實體審查의 3段階 審查를 받게 된다.

1. 方式審查

方式審查에서는 提出된 出願書가 規定과 符合되는지를 檢討하여 輕微한 事項은 補正케 하고 不受理事由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그 出願書는返戻된다.

返戻된 出願書를 再提出하고자 할 때에는 既納入한 基本審查料 納入領收登과 再納入한 方式審查料 納入領收登을 함께 提出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먼저 提出한 日字가 出願日字로 되는 것이 아니고 再提出한 日字가 出願日字로 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不受理事由에 該當되지 않도록 書類作成에 留意해야 한다.

特許法 施行規則 第14條 第1項에 明示된 出願書의 不受理事項中 主要한 것을 들어보면……

- ◎ 出願料를 納入하지 않은 경우
- ◎ 1通의 出願書로 2件 以上的 出願을 請求하는 경우
- ◎ 發明者(考案者)로부터 出願權을 讓減받고 그 讓渡證을 提出하지 않은 경우
- ◎ 代理人의 委任狀을 添付하지 않은 경우
- ◎ 出願書가 國文으로 作成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其他 所定의 書式이나 方式에 合當하지 않을 경우 등이 있다.

方式審查는 原則적으로 出願課에서 出願書가 提出된 時當時에 行하나 後續處理過程에서도 하게 되므로 事實이 發見되면 언제든지 위와 같이 處理된다.

2. 分類審查

受理된 出願書에는 出願順序에 따라 出願番號가 賦與되고 出願課에서 所定의 記錄을 마친 다음 調整課로 移送된다.

調整課에서는 分類審查員으로 하여금 特許와 實用新案은 產業部門別로 分類하여 該當審查局에 移送하며 意匠과 商標도 類別에 의하여 審查 1局으로 移送된다.

分類에는 主分類와 副分類가 있는바 出願內容이 他分野의 技術과 關聯성이 없는 경우에는 主分類만이 賦與되고, 他分野의 技術과도 關聯성이 있을 때에는 副分類까지 함께 賦與되는데, 副分類가 있는 경우에는 그 副分類擔當審查官과 協議 審查하게 된다.

3. 實體審查

各 審查局의 擔當審查官이 出願包袋를 接受하면 分類別 出願日字順序대로 實體審查에着手하

特許制度와

게 된다.

그런데 實體審查라 함은 그 出願이 特許法(實用新案法, 意匠法, 또는 商標法)이나 그 施行令, 施行規則 및 審查基準 等에 明示되어 있는 拒絕事由에 該當되는 事項이 없는지의 與否를 審查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特許 또는 登錄을 許與하는데 있어서 拒絕할 理由가 發見되지 아니하면 일단 出願公告를 하게 되며, 出願公告後異議申請이 없거나, 異議申請이 있었더라도 그 理由가 成立되지 아니하면 特許 또는 登錄을 許與하게 되는 것이다.

實體審查는 複數審查制 즉 2人 以上的 審查官에 의한 合意에 의하여 實施되고 있는바 이것은 보다公正한 審查를 하기 위하여 特許廳이 設立되면서 처음으로 採擇된 制度이다.

拒絕理由通知와 그에 대한 意見書 提出에 대하여 좀더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上記한 第5項 및 第6項에서 어떤 것이 特許對象이 되느냐? 그리고 新規性이나 進歩性이란 무엇이냐? 하는 說明에서 例示한 바와 같이 特許法, 實用新案法, 意匠法 또는 商標法이나 그施行令, 施行規則 및 이와 關聯된 審查基準上의 规定에 抵觸되는 事項이 發見되면 審查官은 第1次的으로 出願人에게 拒絕理由를 通知하게 된다.

拒絕理由通知書에는 出願人으로 하여금 意見書를 提出할 수 있는 期間이 明示되어 있으며, 期間內에 提出되는 意見書에 의하여 拒絕事由를 飜覆시킬 수 없을 때는 拒絕查定이 된다.

다만 意見書提出 期間內에 意見書 提出이 不

不完全 等)이 있을 때에는 出願人 自意로 또는 特許廳의 指示에 의하여 补完할 수 있는데 이를 補正이라 한다.

出願人에 의한 补正是 要旨變更에 該當되지 않는 限 出願公告되기 以前까지는 할 수가 있다. 그러나 出願公告 後에는 異議申請의 結果 審查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 限하여 可能하다.

特許廳에 의하여 發하여지는 补正書에는 特許廳長名義의 补正指示와 審查官名義의 补正指示의 두 가지 種類가 있다.

審查官名義의 补正指示에 대한 补正是 指定期間內에 하지 않았을 때에는 拒絕理由通知書가 發하여지나, 特許廳長名義로 發하여지는 补正指示에 不應하는 경우에는 大部分 그 節次 또는 出願은 抛棄 또는 無効處分된다는豫告에 따라 抛棄 또는 無効處分을 받게 될 것이므로 특히 留意하여야 한다.

그러나 补正指示를 받은 期間內에 补正을 行할 수 없을 때에도 그 期間延長申請을 할 수가 있다.

補正是 出願書 또는 圖面에 관한 것과 參考資料나 參考的인 补充說明 等의 提出에 관한 것과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어 이러한 뜻에서 볼 때 补正是 补充과 訂正의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明細書補正의 경우에는 簡單한 誤字의 訂正, 刪除 또는 簡單한 文字를 追加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明細書를 再作成한 补正書를 提出하는 것이 要望되고 圖面補正의 경우에는 그 补正圖面이 既提出된 圖面과 分離하여 別途로 追加綴할 수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圖面全體를 再作成한 补正書를 提出하는 것이 要望하는 바 이는 公報掲載時의 煩雜性이나 錯誤를 豫防하기 위해 서이다.

過去에는 明細書나 圖面의 补正을 赤字로 行한 바 있으나 現在는 黑色으로만 补正하도록 되어 있다.

<계속>

節次풀이

〈特許廳 指導課〉

可能한 경우에는 同期間中에 指定期間 延長申請을 할 수도 있다.

審查官의 拒絕理由通知에 대한 出願人の 意見書 内容은 그 拒絕理由를 解消시키기에 充分할 程度의 것이라고 認定받을 수 있을 程度로 記載되지 않는 限 그 出願은 拒絕查定을 받게 되므로 出願人は 이 點을 특히 留意하여 充實하고 真實된 意見書를 提出하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4. 补 正

이미 提出된 出願書類가 欠缺(未備, 不明瞭,